

수원지방법원 2019. 3. 12 선고 2018가단713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고 1. F

2. G

3. H

4. I

5. J

6. K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9. 3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88. 12. 26. 접수 제98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88. 12. 26. 접수 제98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,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(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),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·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, 이러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도 함께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 판결)

판사정경희

별지